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소방본부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0일, 이우청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이우청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안 제5조의 2).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영)

가. 개정조례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 일부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손실보상)는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에 따른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등)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제5조(손실보상)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함.

- 제3항에서는 안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르도록 하고,

<p><참 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p>	
<p>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p>
<p>2. 부상등급의 기준</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p>
<p>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p>
<p>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5. 보상금의 환수 기준</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제4항에서는 안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의사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관련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

- 안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는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고 적정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2항 중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기피”를 “해당 위원의 기피”로 하고, “위원”을 “대상이 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금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안제5조의2에 따른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을 위한 면밀한 기준 검토와 합리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시·도별 조례 현황

소방본부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3. 28. 개정 2020. 12. 31.	조례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7. 10. 개정 2020. 3. 10.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6. 8. 개정 2024. 2. 23.	조례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제정 2018. 12. 28. 개정 2021. 4. 9.	조례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제정 2021. 9. 30. 개정 2024. 5. 10.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 4.	조례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13. 개정 2024. 1. 4.	조례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